

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송아량 의원(찬성자 9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317 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1. 9

라. 회부일자 : 2019. 1. 11

2. 제안이유

- 사고 및 재난 현장의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- 특히,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위한 건강 및 복지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상황임.
- 따라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 및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, 실태조사 및 적절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소방

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소방공무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
나.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,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함(안 제5조)

라.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6조)

마.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감염관리실 및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바. 시장이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사. 시장이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전을 위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아.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 10조)

자.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원안참조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조례안은,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 및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, 실태조사 및 적절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대 시민 소방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참고로, 홍성룡 의원이 2019.1.9.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 331호 「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」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, 본 홍성룡 의원 안(의안번호 제331호)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.

[표 1] 의안번호317호와 의안번호 331호 관련 제정안 비교표

의안번호317호 (송아량의원 안)		의안번호331호 (홍성룡의원 안)		비고
안 제1조	목적	안 제1조	목적	내용 일치
안 제2조	정의	안 제2조	정의	안 317호에 소방공무원, 소방업무 등의 정의 추가
안 제3조	책무	안 제3조	시장의 책무	내용 일치
안 제4조	다른 법령과의 관계	안 제4조	다른 조례와의 관계	내용 일치
안 제5조	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	안 제5조	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	안 제331호는 계획수립 규정 없음

안 제6조	실태조사	안 제6조	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	안 제331호는 실태조사 규정 없음
안 제7조	소방활동 보건 관리	안 제7조	직장어린이집 운영	안 제317호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없음
안 제8조	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	안 제8조	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	안 317호는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규정 없음
안 제9조	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	안 제9조	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	내용 일치
안 제10조	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의 보조			안 제331호는 제6조에 소방협력병원으로 규정
안 제11조	시행규칙			안 제331호는 시행규칙 없음

■ 서울시 현황

서울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 현황을 보면,

- ‘심신안정실’은 2012년~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어 전 소방서(안전센터포함) 11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‘감염관리실 및 전용세탁실’은 2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총 43개소가 설치¹⁾되었음.
- ‘체력단련시설’은 전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거나 면적이 협소하여 장기적인 보강 및 개선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임.
- ‘배기가스 배출시스템’은 소방관서 내에 소방차량 출동 및 점검 시에 배출되는 매연을 외부로 배출시키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등 3개소²⁾에 시범 설치해 효과성이

1) 종로, 용산, 도봉, 강북, 성동은 1개소씩 설치, 나머지는 2개소씩 설치

2) - 2017년(추경 2억원 편성, 3개소 시범사업) → 2018년(효과성 분석)

임증되어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.

- ‘소방협력병원’은 보라매병원, 서울의료원, 서울의료원 강남분원, 서울백병원 총 4개소를 지정·운영 중에 있으며, 금년에는 은평성모병원을 추가 지정해 총 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.
- ‘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’은 대응2단계 이상 발령 또는 장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현장 등에 현장활동 대원들의 탈진방지 및 피로누적의 단기적 해소를 위하여 2016년부터 전문의료진을 포함한 심신회복팀을 구성·운영 중에 있고,
- ‘직장어린이집’은 2019년부터 용산소방서와 소방행정타운 2개소에 시범설치 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.

[표 2]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현황

연번	지원제도	현황																		
1	심신안정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간 : 2012 ~ 2017 (6년간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) ○ 소요예산 : 금2,508백만원 ○ 설치현황 : 소방서 및 안전센터 전체설치(117개소, 소방재난본부 포함) 																		
2	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염관리실 설치현황 : 서울소방 43개소 운영중 - 유지관리비 : 51,600천원/년 (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/ 사무관리비) ○ 전용세탁실 : 전 감염관리실에 구급관련 오염물질 세탁실 별도운영 ○ 전용세탁기 : 방화복 전용세탁기 전 소방서 및 안전센터 운영중 ※ 보유기준(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6조 별표2), 보급률 : 100% 																		
3	체력단련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 소방서 및 센터 확보 완료 - 체력훈련장 기준 면적 미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┌ 종로소방서 등 10개서(42%) └ 신교119안전센터 등 43개 센터(46%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3">체력 훈련장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최대면적</th> <th>최소면적</th> <th>평균면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방서별</td> <td>강북소방서 211.3㎡</td> <td>강남소방서 58.3㎡</td> <td>83.8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19안전센터별</td> <td>송파소방서 가락센터 139.9㎡</td> <td>강서소방서 화곡센터 6.6㎡</td> <td>44.3㎡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체력 훈련장			비고	최대면적	최소면적	평균면적	소방서별	강북소방서 211.3㎡	강남소방서 58.3㎡	83.8㎡		119안전센터별	송파소방서 가락센터 139.9㎡	강서소방서 화곡센터 6.6㎡	44.3㎡	
구분	체력 훈련장			비고																
	최대면적	최소면적	평균면적																	
소방서별	강북소방서 211.3㎡	강남소방서 58.3㎡	83.8㎡																	
119안전센터별	송파소방서 가락센터 139.9㎡	강서소방서 화곡센터 6.6㎡	44.3㎡																	

- 2017년 : 영등포(현장대응단 10대), 서대문(홍은 3대), 동대문(휘경 3대)

연번	지원제도	현황
4	배기가스 배출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 영등포 소방서 현장대응단 등 3개소를 시범설치한 후 2018년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, ○ 금년에는 차고 면적대비 개구부가 작아 환기율이 낮은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에 우선 설치할 계획임
5	소방협력병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력병원 : 4개소(보라매병원, 서울의료원, 서울의료원강남분원, 서울백병원) ○ 운영내용 : 전문진료, PTSD 집중관리, 구급대원 실습교육, 직무환경 연구 등 ○ 시행일 : 2018. 1. 1.(예산 : 188,471천원) ※ 2019년 398,400천원 ○ 이용현황('18. 1월~12월) : 인원 3,233명, 예산지출 252,501,370원
6	이동식 심신회복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차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재난현장 심신회복차량 ❖ 제 원 : 전장(12,040)×전폭(2,490)×전고(3,450) ❖ 승차정원 : 45인승 버스 개조 ⇒ 30명(1회 휴식가능정원) ❖ 비치물품 : 냉장고, 전자레인지, 구급약품, 자외선 소독기 등 ○ 운영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의료진을 포함한 심신회복팀 운영(운영4, 운전1, 의사1) - 대응2단계 이상 발령 또는 장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현장 출동 - 혹서기 및 혹한기 또는 재난현장지휘관 요청 시 출동 - 현장활동 대원에 대한 휴식, 식사, 의료서비스 등 제공
7	직장어린이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9년부터 용산소방서, 소방행정타운 2개소에 시범설치계획 추진 중임.

■ 주요골자별 의견

가. 목적 (안 제1조)

- 안 제1조는,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,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됨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』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, ‘소방공무원’, ‘소방활동’, ‘소방활동재해’, ‘소방관서’, ‘복지시설’, ‘체력단련시설’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- ‘소방활동’의 경우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제1항3)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뜻하고,
- ‘소방활동재해’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함.
- 또한, ‘복지시설’은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운영하는 소방관서 매점, 식당, 수련원, 보육시설 등을, ‘체력단련시설’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정의 하고 있는데, 이들 모두 본 조례안을 이해하기에 적절하게 용어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.

3)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(소방활동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다.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, 시장에게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④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자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- 이는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3조4)에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,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건강장애 예방, 부상 및 질병 치료와 생활안정 등에 관해 적극 노력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반영이며 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하도록 함은 긍정적인 조치라 사료됨.

-
- 4)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자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라.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,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, 예산지원, 인력·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.
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『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
2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3.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·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4.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
5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- 이는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8조5)에 매년 시·도지사는 매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토록 한 것을 안 제5조제1항에 반영하고,

- 동법 시행령 제4조6)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

- 5)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·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6)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

사항을 안 제5조제2항에 인용하면서 여기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(제5호)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,

- 안 제5조제3항의 경우는, 시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‘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’토록 규정하고 있는데, 본 조례안은 그 대상이 시민이 아닌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시민이나 기관·단체 등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.
- 따라서, 안 제6조가 이를 반영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안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

[표 3]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

본 조례안	수 정 안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~ ② 생략 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u>	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~ ②(본 조례안과 같음) <u><삭제></u>

마. 실태조사 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,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에 대한

집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
2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3.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·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

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.
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- 이는 실태조사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소방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- 다만,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‘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‘정기적으로’라는 문구는 시기를 시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은 있으나,
- 조사 주기가 불명확하여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으로 ‘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’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[표 4]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

본 조례안	수 정 안
제6조(실태조사) ① 생략	제6조(실태조사) ① (본 조례안과 같음)
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.	② -----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. ----- ----- -----.
③ 생략	③ (본 조례안과 같음)

바. 소방활동 보건 관리 및 복지시설 지원 관련 (안 제7조, 제8조)

- 안 제7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(제1항), 휴게실 및 심신안정실(제2항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8조는 복지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·운영(제1항)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소방재난본부가 이미 설치·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 시행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.

제7조(소방활동 보건 관리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·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및 전용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 유지·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,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사.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 보조 관련 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는 시장에게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제1항7)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

7)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(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)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(「정부조직법」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

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음.

제10조(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의 보조)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- 이는 법 제10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위하여 ‘경찰병원’ 또는 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’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
- 시장이 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설치하려는 것으로, 해당 의료기관이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원활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여겨짐.
- 다만, 현재 서울시의 경우 앞서 서울시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라매병원 등 4개 병원을 ‘소방협력병원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본 조 제목을 ‘소방협력병원 운영비 지원’으로 그리고 ‘소방청장이 지정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’를 ‘시장이 지정한 소방협력병원’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.

[표 5]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

본 조례안	수 정 안
제10조(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의 보조)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<u>소방청장이 지정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</u>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	제10조(소방협력병원 운영비 지원) ----- ----- <u>시장이 지정한 소방협력병원</u> ----- -----.

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④ 생략

■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,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료됨.
- 다만, 홍성룡 의원이 2019.1.23.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 331호 「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」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, 본 송아량 의원 안(의안번호 제317호)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